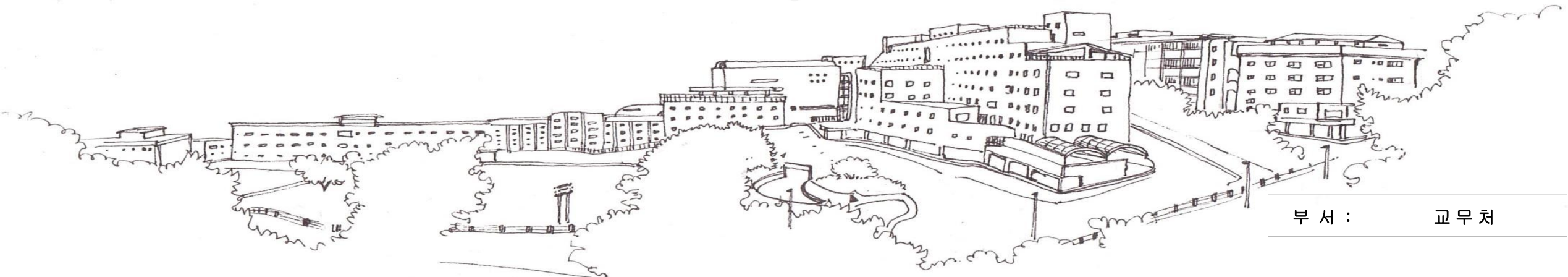


2024학년도 제4차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공고

2024. 11. 06.



부서 : 교무처

I. 2024학년도 제4차 학칙 개정(안)

학칙 제5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현행

학부명	학과명	입학정원	학부명	학과명	입학정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120	보건 과학부	환경안전보건학과	20
보건 의료 학부 [I]	임상병리학과	124		의무부사관과(응급구조학전공)	30
	치기공학과	105		국방응급의료과	40
	치위생학과	130		경찰과학수사학과	20
	안경광학과	64		재난소방·건설안전과	20
	바이오의학과	30			
보건 의료 학부 [II]	방사선학과	120		보건 융복합 학부	컴퓨터정보학과
	보건의료행정학과	60	패션컬러·스타일리스트과		20
	물리치료학과	80	스포츠건강관리과		20
	응급구조학과	71	반려동물과		50
	작업치료학과	60			
휴먼 케어 학부	뷰티케어과	35	교육학부	유아교육학과	44
	사회복지학과	40	HIT자율전공학부		20
	장례지도과	32	교양교육원	인문교양	·
	호텔조리&제과제빵과	32		과학기초	
합계					1,407

개정(안)

학부명	학과명	입학정원	학부명	학과명	입학정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120	보건 과학부	환경안전보건학과	20
보건 의료 학부 [I]	임상병리학과	124		의무부사관과(응급구조학전공)	30
	치기공학과	105		국방응급의료과	40
	치위생학과	130		경찰과학수사학과	20
	안경광학과	64		재난소방·건설안전과	20
	바이오의학과	30			
보건 의료 학부 [II]	방사선학과	120		보건 융복합 학부	컴퓨터정보학과
	보건의료행정학과	60	패션컬러·스타일리스트과		20
	물리치료학과	80	스포츠건강관리과		20
	응급구조학과	71	반려동물과		50
	작업치료학과	60			
휴먼 케어 학부	뷰티케어과	35	교육학부	유아교육학과	44
	사회복지학과	40	HIT자율전공학부		20
	장례지도과	32	교양교육원	인문교양	·
	호텔조리&제과제빵과	32		과학기초	
합계					1,407

2024학년도 제4차 학칙 개정(안)

학칙 제8조(조직)

현행	개정(안)
<p>① 본 대학교에는 청렴감사실, 미래융합사업처, 기획처, 교무처, 학생·취업처, 입학처, 사무처를 두며 실 및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p> <p>1. 미래융합사업처에는 미래융합센터, 대학성과관리센터를 둔다.</p> <p>1-2. 기획처에는 기획팀, 국제교류센터, 정보기술팀을 둔다.</p> <p>2. 생략</p> <p>3. 학생·취업처에는 학생팀, 취창업·대외협력센터, 자원봉사·장애학생지원센터, 예비군 대대를 두며, 학생팀에 건강관리실(보건, 상담)을 둔다.</p> <p>3-2. 입학처에는 입학·홍보팀을 둔다.</p> <p>② - ③ 생략</p>	<p>① 본 대학교에는 청렴감사실, 기획처, 교무처, 학생·취업처, 입학처, 사무처를 두며 실 및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p> <p>1. 기획처에는 기획팀, 대학성과·IR센터, 대학정보관리팀을 둔다.</p> <p>1-2. 삭제</p> <p>2. 좌동</p> <p>3. 학생·취업처에는 학생팀, 취창업·대외협력센터, 자원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예비군 대대를 두며, 학생팀에 건강관리실(보건, 상담)을 둔다.</p> <p>3-2. 입학처에는 입학·홍보팀, 국제교류센터를 둔다.</p> <p>② - ③ 좌동</p>

학칙 제8조의 3(글로벌 사업본부)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① 글로벌사업본부에는 글로벌사업단을 둔다.</p> <p>② 글로벌사업단의 조직 및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4.12.01.]</p>

I. 2024학년도 제4차 학칙 개정(안)

학칙 제25조의3(HIT자율전공학부)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25조의3(HIT자율전공학부) ①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여 전공탐색 기간을 거친 후 전공(학과)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간호학과 및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학과 선택 불가)</p> <p>② 학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4.12.01.]</p>

학칙 제28조(전과)	
현행	개정(안)
<p>제28조(전과) ①생략</p> <p>②전과의 과별 전입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이내로 한다.<개정 2013.05.01.> 다만, 교원양성관련학과 및 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의 취득과 관련된 학과로 전입할 수 있는 전입정원은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③전과의 과별 전출정원은 전출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p> <p>④ <개정 2013.05.01., 2015.01.01., 삭제 2024.05.01.></p> <p>⑤생략</p>	<p>제28조(전과) ①좌동</p> <p>②(학)과별 전과의 전입정원 및 전출정원은 수요조사를 통해 정하되, 전출정원은 전출(학)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5% 이내로 한다. 다만, 교원양성관련학과의 전입정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의 취득과 관련된 학과의 전입정원은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③ <삭제 2024.12.01.></p> <p>④ <삭제 2024.05.01.></p> <p>⑤좌동</p>

I. 2024학년도 제4차 학칙 개정(안)

학칙 제35조(교육과정)

현행	개정(안)
<p>제3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교직, <u>자기주도선택</u>으로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②~⑤ 생략</p>	<p>제3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교직, <u>공통선택</u>으로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②~⑤ 좌동</p>

학칙 제35조의3(전공의 이수)

현행	개정(안)
<p><신설></p>	<p><u>제35조의3(전공의 이수) ① 학생은 소속학과 전공(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복수전공 :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교육과정을 이수</u> <u>2. 부전공 : 학생이 소속된 학과 이외의 전공교육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u> <u>3. 소단위 전공과정 : 특정 분야에 지정된 최소학점을 이수하는 마이크로디그리나 노디그리 과정으로 학칙 59조의4를 준용</u> <p><u>② 각종 증명서와 졸업증서에는 주전공 외에 이수전공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다.</u></p> <p><u>[본조신설 2024.12.01.]</u></p>

I. 2024학년도 제4차 학칙 개정(안)

학칙 제35조의4(융합전공)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34조의4(융합전공) ①본 대학교의 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다양한 전공학습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4.12.01.]</p>

학칙 제87조 (학교기업의 설치)

현행	개정(안)
<p>제87조(학교기업의 설치) ①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대전보건대학교의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시설 2. 노인복지시설 3. 기타 규정이 정한 시설 <p>② 생략</p> <p>③학교기업은 물리치료과,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노인복지시설’ 사업종목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p>	<p>제87조(학교기업의 설치) ①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대전보건대학교의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시설 2. 노인복지시설 3. 기타 규정이 정한 시설 <p>② 좌동</p> <p>③학교기업은 대학의 각 [학과와 연계하여 본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사업 내용으로 할 수 있다.</p>

I. 2024학년도 제4차 학칙 개정(안)

학칙 별표7

현행

개정(안)

제 호

학 위 기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위 사람은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졸업심사에 합격하여 OO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학위등록번호: 대전보건(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전문기술석사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000학(000분야) 기술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학위등록번호: 대전보건(석)

I. 2024학년도 제4차 학칙 개정(안)

부 칙	
현행	개정(안)
<신 설>	<u>이 학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5조, 제8조, 제8조의3, 제87조는 10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u>